Institutum Lex Feminae | ILF-ROK-PB-2026-04-KR | 대한민국 | 2026 년 9 월

삭제에서 지속적 무력화로: 2026 년 국민생각함 디지털성범죄 정책 제안을 위한 제도 설계안

요약

대한민국은 이미 단순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고 있다. 2026 년 8 월 범정부 대책은 불법사이트 개설행위 독립범죄화, 광고수익 차단, 긴급차단, 전담수사, 이른바 '능동적 방어'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겨냥한다. 따라서 현재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수단을 추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예정 수단을 하나의 집행 사슬로 연결하는 것이다.

Institutum Lex Feminae 는 네 가지 실행 장치를 제안한다. 첫째,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재유포를 지속 탐지하는 '1 회 신고-지속 보호' 체계, 둘째, 반복 불응 사이트에 대한 인프라 단계별 제재 사다리, 셋째, 삭제·폐쇄 전에 수사·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표준화하여 보전하는 절차, 넷째, 30·90·180 일 기준의 '지속적 무력화' 성과지표다. 핵심은 재발견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국가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

왜 지금 개입해야 하는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은 2026 년 9 월 16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진행되며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명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는 8 월 20 일「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여러 법·제도 개선안이 아직 설계·입법 단계에 있어 정책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과거 수집된 불법사이트 34,628 개 중 6,683 개가 2026 년 8 월에도 접속 가능했고, 한국어 운영 또는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1,316 개 사이트에 한국인 관련 영상 약 215 만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서는 10,637 명의 피해자에게 352,103 건의 지원이 제공됐고, 지속지원 피해자는 45.1%였다. 전체 지원의 90.3%가 삭제지원이었으며, 불법·유해사이트 삭제불응률은 24.7%에서 28.5%로 상승했다.

정책 공백

삭제요청 건수, 접속차단 건수, 수사 착수 및 검거 건수는 행정 활동을 보여주지만 피해 영상의 유통이 실제로 중단됐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국내에서 차단된 도메인은 해외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고, 삭제된 URL 은 다른 경로로 재업로드될 수 있으며, 운영자를 검거해도 원본 서버가 남아 있으면 유통이 지속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일 영상의 재유포를 반복해서 직접 발견·신고해야 한다면 국가 대응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권고

1. '1 회 신고-지속 보호' 재유포 감시체계 도입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확인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형 디지털 지문 또는 사건연계 식별값을 생성하도록 한다. 참여 플랫폼, 확인된 불법사이트 및 새롭게 발견되는 미러·변경 도메인에서 동일·변형 콘텐츠가 재등장하는지 지속 탐지하고, 재발견 시 피해자의 재신고 없이 검토·삭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 7 조의 4 가 중앙디성센터에 부여한 삭제지원, 피해예방 연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능을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다. 피해자 동의, 목적 제한, 접근권한 통제, 감사기록, 보유·삭제기준을 필수 보호장치로 둔다.

2. 반복 불응 사이트에 대한 '인프라 제재 사다리' 표준화

확인된 삭제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콘텐츠 삭제요청 → 계정·플랫폼 조치 → 도메인·접속 제한 → CDN 조치 → 호스팅 중단 요청 → 광고·결제수익 차단 → 수사의뢰 → 서버 압수 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능동적 방어 순으로 단계별 대응을 기록한다. 모든 사건이 최종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단계에서 왜 종료됐는지는 기록되어야 한다.

2026 년 9 월 정부 실적에서 5 개 호스팅 업체에 68 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지만 당시 실제 호스팅 중단은 1 건에 그쳤다는 점은 이러한 단계별 전환율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3. 파괴적 삭제·폐쇄 전에 '공소유지용 증거 패킷' 자동 보전

원본 서버·계정·파일을 차단하거나 원격 삭제하기 전에 URL·도메인 변경 이력, 시각정보, 콘텐츠 해시, 적법하게 확보된 운영자 식별정보, 호스팅·CDN 정보, 광고·결제 연결정보, 피해자 사건연계번호 및 증거보전 기록을 표준화된 형태로 보전한다. 피해자가 유통 경로를 다시 구성하지 않아도 경찰·검찰에 이전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긴급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이 삭제와 동시에 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이는 향후 능동적 방어 제도의 적법성과 공소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사이트 무력화가 오히려 핵심 증거를 소실시키는 역설을 방지한다.

4. 핵심 성과지표를 '삭제 건수'에서 '지속적 무력화율'로 전환

확인된 성착취물 또는 사이트 네트워크별로 30 일, 90 일, 180 일 후에도 실제로 접근·유통이 억제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URL 삭제, 국내 접속차단, 서버·호스팅 중단, 운영자 무력화, 미러·변경 도메인 재출현을 각각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하나의 도메인이 차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무력화'로 집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중심 지표로는 보호 사건당 확인된 재유포 횟수와 재유포 탐지 후 조치까지의 중앙값 시간을 추가한다. 이는 2025 년 지속지원 피해자가 전체의 45.1%로 증가한 현실에서 국가 대응이 반복피해 부담을 실제로 줄였는지를 보여준다.

법적·제도적 적합성

본 권고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법 제 7 조의 4 는 이미 중앙디성센터에 삭제지원, 예방, 연구, 국내외 협력 및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026 년 범정부 대책 역시 긴급차단, 광고수익 차단, 전담수사, 플랫폼 의무 강화 및 능동적 방어를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이 수단들 사이의 인계 기준과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공통 구조다.

제출·수신 대상

1 차 제출: 성평등가족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 제도 실행 관련 수신 대상: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법무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입 단계

정책 설계·도입 전 단계(PRE-POLICY/IMPLEMENTATION DESIGN). 국민 생각함 의견 수렴 마감은 2026 년 12 월 31 일이다. 본 권고는 8 월 이후 추진 중인 법·제도 및 운영체계가 아직 조정 가능한 시점에 집행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더 큰 삭제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국가가 재유포와 인프라 이동을 추적하고, 삭제 전에 증거가 보전되며, 성착취 물이 실제로 장기간 유통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사후 삭제에서 지속적 무력화로의 실현 가능한 전환이다.

공식 자료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OUT! 국민 레이더 ON」, 2026.9.16.~12.31. 국민생각함 정책 제안 수렴.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o?mid=mda700
-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8.20.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5030
- 성평등가족부, 제 3 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추진실적, 2026.9.22.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o?mid=mda7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3·제 7 조의 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05875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13466&mid=mda703